

제천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 심사 보고서

1. 심사 경과

-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9. 8. 31. 제천시장
- 회부일 : 2009. 9. 2.
- 상정일 : 2009. 9. 9.(제16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회의)

2. 제안설명 (제안설명자 : 기술지원과장 원선흐)

가. 제안이유

「제천시 농기계수리센터 및 농기계은행 설치 운영 조례」를 근거로 운영하던 농기계 수리센터 운영을 농기계 순회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별도로 제정함에 따라 관련 인용조항 및 문구 등을 제정하여 시행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농업기계 임대사업 관련 용어 정의(안 제2조)
- 농업기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허가 및 교육(안 제7조)
- 농업기계 임대기준 (안 제8조)
- 임대료, 임대료감면, 임대료 반환 등(안 제9조 ~ 제11조)
- 농업기계 사용허가제한, 반환, 사용의 책임 및 변상(안 제12조 ~ 제14조)

3. 전문위원 겸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이광신)

- 본 조례안은 「농업기계화 촉진법」 제8조의2에 의거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 농기계를 임대하여 농기계의 구입부담을 덜어주고 농기계 임대사업의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으로

- 행정절차법에 의거 2009년 7월 10일부터 7월 30일 까지 21일간 제천시 홈페이지와 시보에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2009년 8월 27일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거치는 등 법적으로 하자는 없습니다.
- 본 조례안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안 제5조(운영과 관리)에서는 임대사업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고 농기계 임대의 운영·관리는 농기계 수리와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농업기술센터의 장이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
- 안 제7조(사용허가 및 교육)에서는 농기계를 임차하고자 할 때에는 농업기계사용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기계조작 요령을 사전교육 후 출고하도록 규정한 사항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필수적인 조치라고 판단됩니다.
- 안 제8조(임대기준)에서는 농기계 대여기준은 형평과 운영질서를 위해서 신청 접수순에 의거 사용자 당 1대를 원칙으로 하고 임차인의 자격은 제천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인 또는 생산자 단체로 하고 임대기간을 3일이내로 규정하고 있는바 사용신청 대상자 및 작업소요시간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임대기간을 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
- 안 제9조 및 안 제10조에서 농기계 사용료는 농기계 구입 금액에 따라 차등 부과하도록 하였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나 국가유공자 등은 50% 감면하며 재해복구 등 공익상 필요할 때는 면제하도록 하였습니다.
- 안 제12조(사용허가의 제한)에서는 농기계를 임대한 후 농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1년간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, 이는 값비싼 농기계를 임차한 후 성실하게 관리하지 않고 규정된 기일내에 반환하지 않은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다수의 선량한 농민이 차질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재산을 성실하게 관리하기 위한 측면에서 필요한 제재조치라 사료되며
- 안 제14조(사용자의 책임 및 변상)에서는 농기계 사용자가 임대기간

중·망실 또는 훼손에 대한 변상의무를 지고 인적, 물적 피해 발생시 책임을 지도록 규정한 사항으로 사용자가 임대농기계에 대한 망실, 훼손에 대한 변상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고 농기계 사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농기계 안전보험 및 사용자에 대한 보험 가입 문제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장의 자세한 설명과 더불어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.

- 농업기계 임대사업은 개별농가의 농기계 구입부담을 줄이고 농기계 이용률을 높여 농업의 생산성 향상 및 농업기계화 촉진으로 농촌 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나, 농기계에 대한 사용방법을 모르는 여러 사람들이 기계를 사용하다 보면 잦은 기계고장으로 임대기계 내구연한의 절반밖에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점 등을 고려하여
- 전담 기술인력 및 조직 확보를 통하여 공동이용이 가능하고 지역 실정에 적합한 임대농기계를 구입하여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과 빈번한 농기계 사고에 대한 보험가입 등 대비책 마련을 위한 세부적인 시행규칙의 제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.

4. 질의 답변 요지

가. 질의요지

-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직속기관으로 권한을 위임받아 처리하고 있는데 제5조 운영 및 관리와 제7조제2항 농업기계 출고를 시장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이유? 본 조례가 금번에 꼭 처리되어야 하는지?
(유영화 위원)
- 농기계 대여와 관련한 원거리농가에 대한 대책과 영세농가는 농기계 대여시 고장날 경우 금전적 부담으로 임대를 어려워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?(김병룡 위원)
- 현 보유 농기계 이외에 더 필요한 농기계는?(최종섭 위원)
- 기계에 대한 보험에만 국한하지 말고 상해보험 관련사항 까지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람.(김명섭 위원장)

나. 답변요지 < 기술지원과장 원선흐 >

- 농기계 대여은행은 무상운영 했으나 농업인들이 엔진달린 기종 대여를 요구함에 따라 무상에서 유상으로 전환하는 것이며, 농민의 이익을 위하여 꼭 필요한 조례임.
- 남제천농협과 금성농협에 대여은행이 있고 자체 차량으로 현지까지 운반을 고려하고 있음. 소규모 농가 대여시 안전사고 예방과 사용요령, 취급방법등을 교육후 임대하도록 하겠음.
- 옥수수 베일러가 필요하며 예산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음.
- 농기계 보험과 관련된 사항을 충분히 알아보고 조치하겠습니다.

5. 소수의견

“ 없음 ”

6. 토론요지

“ 없음 ”

7. 심사내용

- 산업건설위원장 수정안 발의
- 이의유무에 의한 수정안 가결(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60조제1항)
 - 안 제5조제1항 “시장은”→“농업기술센터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”
 - 제7조제2항 “시장은”→“농업기술센터소장은”
 - 부칙 제2조 오타수정 “농업기계”→“농기계”

8. 심사결과

“ 수정안 가결 ”

9. 심사보고 불임서류

- 제천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1부.
- 조문대비표 1부. 끝.

제천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번호	1376
------	------

제안연월일 : 2009. 9. 9.

제 안 자 : 김명섭 위원회 3인

1. 수정이유

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예산 확보와 운영, 농업기계 출고등을 농업 기술센터에서 추진하여야 함을 명확히 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안 제5조제1항중 “시장은”을 “농업기술센터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”로 한다.

안 제7조제2항중 “시장은”을 “농업기술센터소장은”으로 한다.

안 부칙 제2조중 「제천시 농업기계수리센터 및 농업기계은행 설치 운영 조례」를 「제천시 농기계수리센터 및 농기계은행 설치 운영 조례」로 한다.

제천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제천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5조제1항중 “시장은”을 “농업기술센터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”로 한다.

안 제7조제2항중 “시장은”을 “농업기술센터소장은”으로 한다.

안 부칙 제2조중 「제천시 농업기계수리센터 및 농업기계은행 설치 운영 조례」를 「제천시 농기계수리센터 및 농기계은행 설치 운영 조례」로 한다.

수정안 대비표

원 안	수 정 안
<p>제5조(운영 및 관리) ① <u>시장은</u> 임대 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 운영하여야 한다.</p> <p>②-③ (생략)</p>	<p>제5조(운영 및 관리) ① <u>농업기술센터소장은</u> 시장의 명을 받아.....</p> <p>.....</p> <p>②-③ (원안과 같음)</p>
<p>제7조(사용허가 및 교육) ① (생략)</p> <p>② <u>시장은</u> 사용자 입회하에 다음 각 호를 수행한 후 농업기계를 출고하여야 한다.</p> <p>1.-2. (생략)</p>	<p>제7조(사용허가 및 교육) ① (원안과 같음)</p> <p>② <u>농업기술센터소장은</u></p> <p>1.-2. (원안과 같음)</p>
<p>부칙</p> <p>제2조(다른 조례의 폐지)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「제천시 농업기계수리센터 및 농업기계은행 설치 운영 조례」를 폐지한다.</p>	<p>부칙</p> <p>제2조(다른 조례의 폐지) 「제천시 농기계수리센터 및 농기계은행 설치 운영 조례」</p>